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023.6.12.(월) 10:00]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복지동행국)

검 토 보고 서

〈 전문위원 장홍용 〉

1. 안 건 명

2022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안건번호

가. 의안번호 : 제23-91호

3.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5월 22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4. 회부일자

가. 회부일자 : 2023년 5월 25일

5.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나.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1 복지동행국 예비비 지출 현황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 현황>

구 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총 계			347,557,000	341,567,241	3,600,000	2,389,759	
일반 예비비 합계 (1건)			8,725,000	8,725,000	-	-	
주민생활 복지과	통합사례 관리사 인력운영	공무직 (무기계약)근 로자 보수	8,725,000	8,725,000	-	-	무기계약직 근로자(통합사례관리사) 퇴직금 지급(9.27.)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합계 (6건)			338,832,000	332,842,241	3,600,000	2,389,759	
주민생활 복지과	동 복지기능 강화	사무관리비	97,532,000	97,319,160	-	212,840	저소득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1.18.)
	재해구호 추진	민간인재해및 복구활동보상 금	10,800,000	7,200,000	3,600,000	-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지원(11.9.)
어 르 신 동 행 과	어르신요양시 설 재난지원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1,500,000	20,323,081	-	1,176,919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어르신복지시설 지원(2.7.)
가족행복 지원과	어린이집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71,000,000	170,000,000	-	1,000,000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어린이집 지원(2.3.)
아 동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1,000,000	11,000,000	-	-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지역아동센터 지원(1.26.)
교 육 정책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대 한보조	27,000,000	27,000,000	-	-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유치원 지원(2.7.)

○ 예비비는 관계법령¹⁾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며,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지출사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임.

○ 2022년 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3억 4,755만 7천원이고

지출 총액은 3억 4,156만 7,241원,

총 이월액은 360만원임.

- 복지동행국 소관 예비비 전체 건수는 총 7건이며, 일반 예비비 1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건임.
- 일반 예비비는 주민생활복지과 1건으로 지출액은 872만 5,000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주민생활복지과 2건, 어르신동행과 1건, 가족행복지원과 1건, 아동청소년과 1건, 교육정책과 1건이며, 3억 3,883만 2천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지출액은 3억 3,284만 2,241원임.

1)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어르신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방역물품(마스크) 지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이 된 사항이 대부분이나,
- 주민생활복지과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사업추진 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향후에도 추가 예산 소요 사업이나 경비 충당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